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18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석O성	84.10.22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리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친 출석통지에도 응하지 않음. 1차 출석통지:21.5.14. 2차 출석통지:21.5.24.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안성시 공도읍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06.18. ~ 2021.07.02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강희경(Tel. 031-686-171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